

작성 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주택법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(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)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
1. ①신고구분 : 해당 연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추가(최초신고 포함)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"추가", 전년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(과세대상에 포함)하는 경우에는 "제외"를 적습니다.
2. ②소재지 : 주택 신축용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3. ③취득일 : 주택 신축용 토지의 취득 연월일을 적습니다.
4. ④지 목 :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(대지, 공장용지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 등)을 적습니다.
5. ⑤면 적 : 토지면적을 적습니다.

[별지 제64호의17서식(2)] <개정 2022. 3. 18.>

[illegible]